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신청인	회사명 한올기술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강득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69.02.26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천안대로 1718 (부영아파트) 101-311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도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15417호 지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0 15417호	지목 학교용지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v ]
	공장 등록일 2020-06-26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 0      여 : 0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공장 부지 면적                      0 m <sup>2</sup>	제조시설 면적                      25 m <sup>2</sup>	부대시설 면적                      27.8 m <sup>2</sup>
등록 조건			

등록변경 · 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공장관리번호 : 4413320204875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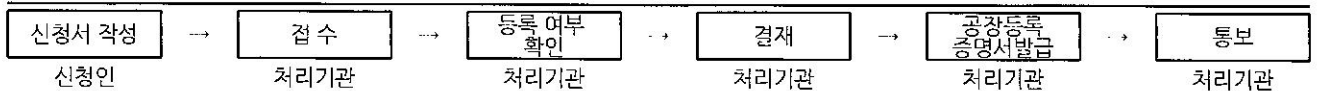
2020년 08월 14일

신청인      한올기술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	----	-----	---

### 처리 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08월 14일

**천안시장**

납세번호 133 9 30 114 001 2020 08 3 250 008113 9

납세자 이강득 납세자번호 690226 -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천안대로 1718,  
101동 311호 (부영아파트) 수월리 <2동>  
과세대상 공장등록(성환읍 대학로 91, 15-41  
7호 (남서울대학교))



세	목	분	세	가	산	세	과	종
등록면허세			9,000		0		4종	공장등록

김민주  
0415213313

합 계 9,000 납부기간 2020.08.31

2020년 08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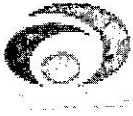


44133 1 30 20 1 0645369 0

총채납액: 천안시서북구청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 천 안 시



수신 한올기술 귀하  
(경유)

제목 공장등록 알림[성환음: 한올기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공장등록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장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제세공과금 납부 후 공장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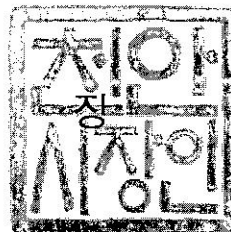
○ 등록 내용

(단위: m<sup>2</sup>)

업 체 명 (대 표 자)	공 소 재 지	공장부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업 종 (분 류 코 드)
한올기술 (이강득)	성환음 대학로 91 지식정보관 15417호	임대	25	27.8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 사업자등록번호: 785-33-00434/ 등록면허세: 9,000원					

붙임 공장등록조건\_한올기술 1부. 끝.

천 안 시



주무관 이유리 기업허가팀장 정원진 허가과장 허가과장 전결 2020. 6. 29. 장석범

협조자

시행 허가과-29589 (2020. 6. 29.) 접수

우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허가과 (불당동) / www.cheonan.go.kr

전화번호 041-521-5854 팩스번호 041-521-2169 / ly11048@korea.kr / 비공개(6)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

# 한올기술 공장등록 조건

---

## [허가과-기업허가팀] 조건부

1. 공장 운영에 따른 인근 토지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공장 등록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공장 건축물을 임대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대계약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개발허가팀]

- 도시계획시설(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와 협의 바람.

## [청소행정과-폐기물팀] 조건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지정폐기물(폐석면, 폐유 등) 및 의료폐기물을 확인의무 대상량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천안시청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으로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 하여야 함.

## [환경정책과] 조건부

- 환경관련검토자료 검토결과 기계·설비 규모미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되지 않으나,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 환경피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하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환경위생과-환경관련분야]

- 공통사항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피해(먼지, 소음, 토사유출, 오수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용량 적합함. 단, 방류수가 타 소유 부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시설의 전원설비 항시 가동 등)

#### [환경위생과-청소관련분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여 배출될 경우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시계획과]

○ 별도 의견 없음

#### [급수과]

○ 별도 의견 없음

※ 공장등록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 안 시 장